

제27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4. 2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년 4월 24일
전문위원 정 우 숙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0 - 29
- 나. 제 출 자: 황영호 의원 외 5명
- 다. 제출일자: 2020년 4월 13일
- 라. 회부일자: 2020년 4월 20일

2. 제정이유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에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저장강박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이 라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마.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사.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아.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민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합 의: 복지정책과

다. 기 타: 입법예고(2020. 4. 14. ~ 4. 19)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

저장강박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로써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1)[안 제1~2조] 목적 및 용어 정의

2)[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규정

3)[안 제4~5조] 조례의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

-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기초연금법」에 의한 대상 가구
-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5)[안 제6조]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내용 등

-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거
-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 지원

6)[안 제7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해 본인의 가족 및 이웃들에게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이번 조례안 제정은 서울시 최초로 우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제3조 구청장의 책무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부서간 협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5조에서 지원 대상을, 제6조에서 지원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 저장물의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 등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 및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됩니다.

□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①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② 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 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 976조에 따른다.